

이천시주민감사청구조례 개정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3. 6. .
제 출 자 : 이 천 시 장

개정구분 : 부분개정

개정이유

- 주민들의 적극적인 자치참여를 위해 2000. 3. 2일부터 시행된 주민감사청구제도는 감사청구인 수를 20세이상 주민수의 비율(500명)로 정하였으나, 매년 인구증감에 의한 감사청구인 수의 변동에 따라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므로 인원수로 정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토록 하고,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 도모 및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주민감사청구인수 조정
 - 현행 : 500명이상 → 200명이상

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이의사항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03. 5. 2 ~ 5. 22

기타참고사항

○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방안(감사16800-10202,11595)

이천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500명이상"을 "200명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입 안 자	실·과·소장 직위·성명	기획감사담당관 김 종 춘
	담당·팀장 직위·성명	감사담당 김 응 제
	담 당 자 성명·전화	최 선 영 (207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 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할 주민의 수 는 <u>500명이상</u> 이어야 한다.</p>	<p>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 ----- ----- ----- <u>200명이상</u> ----- -----.</p>

관계법령 발췌서

조례	관계법령	조 문 내 용
	지 방 자치법	<p>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범위안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②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③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20세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제13조의3제2항내지 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은 20세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감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본다.</p>